## 공정거래법상 심결제도 검토

2014.6.16.

# 공정거래법상 심결제도 검토 

2014. 6. 16. 
1. 일 시 : 2014년 6월 16일(월) 15:30-18:00
2. 장 소 : 동국대학교 법학관 374 세미나실
3. 구 성

사 회 :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발 표 : 손영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 김두진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윤소정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변호사)

이훈종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조성국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근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가나다' 순)

## 목 차

## ■ 공정거래법상 심결제도 검토 (손영화)

I. 서 론 ..... 9
I.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심결제도 ..... 11

1.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위 ..... 11
2. 심사 및 심결절차 ..... 12
3. 심사 및 심결제도의 특징 ..... 13
III. 일본의 심판제도 ..... 16
4. 심판제도의 변화 ..... 16
IV. 심결제도의 합리적인 대안에 대한 검토 ..... 29
5. 현행 심결제도의 보완방안 ..... 30
6. 심결제도의 개혁을 위한 검토 ..... 35
(ㅇ 토 론 문 (김두진) ..... 39
(ㅇ) 토 론 문 (윤소정) ..... 41
( ${ }^{\text {( 토 론 문 (조성국) }}$ ..... 47

## 공정거래법상 심결제도 검토

손 영 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I．서 론

우리나라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된 행 정기관인 동시에 위반행위에 대해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법령의 해 석•적용，즉 심결을 통해 위반상태를 배제하는 준사법기관이기도 하 다．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무리 전문적 판단을 행하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이라고 해도 그것이 실시하는 심결이 항상 옳다고 보기는 어 렵다．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하는 심결은 가능한 한 그 공정성 및 객관 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결정구조와 절차가 구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공정거래법은 이를 위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도록 사법절차에 준하 는 정당한 심결 구조를 마련하고 심결을 담당하는 자가 전문적 지식 을 가진 독립한 지위에서 위반사실의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을 해석• 적용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되고，모든 심결 과정이 합리적인 증거법 칙과 적절한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1）이런 요청을 감안하여 오늘날 각국에서는 대심구조를 취하는 사실심형의 행정심판제도를 도 입하여 의사결정 자체를 사법화하거나 조사에서 행정처분에 이르기까 지 사전절차로서 피심인에게 고지와 청문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적정한 심결구조와 절차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 다．또한 증거의 수집과 채용에 있어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또한 그 심결에 불복이 있는 자를 위해 이의신청 및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늘날 각국은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지키는 경쟁법을 가지고 있다．이와 같은 경쟁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법원에

[^0]서의 소송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법형 제도와 공정거래위원회 와 같은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정형 제도가 있다. 기 본적으로 사법형 제도의 경우에는 법원에서의 재판을 통하여 경쟁법 위반 여부를 다툼으로써 어느 의미에서는 법 위반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재판절차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 여 신속한 피해구제 등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하여 행정형 제도의 경우에는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심결제도를 통한 법 위반행 위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심결에 있어서 이른 바 피심인의 법적 지위의 보호를 위하여 이른바 대심구조를 통한 심 결의 진행 및 심결절차에 있어서의 피심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위한 고지 및 청문제도 등의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제 도가 채용되는 경우에는 이른바 행정형 제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 는 신속하고 유연한 제도의 운용은 다소 침해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 다. 가국은 자국의 현실에 맞게 적정하게 제도를 선택하여 경쟁법의 집행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더불어 행정형 제도로서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해 오던 일본이 2013년 심판제도를 폐지하고 이른바 심급생략의 제도로서 운 용해 오던 일본 독점금지법의 운용을 제 1 심 법원을 동경 고등법원에 서 동경 지방법원으로 변경하는 독점금지법 개정을 단행한 바 있다. 이에 우리나라 심결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에 대 하여 검토해 볼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정 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현행 2심제에서 3심제로 전환하 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정무위에 제출된 바 있다. 이에 대하여는 이른바 재판 받을 권리의 보장이란 차원에서 찬성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 }^{2}$ ) 그러나 현행 2심제 절차에 1심 하급심을 추가하면
2) 1998년 행정법원이 생긴 뒤 세금 사건을 비롯해 대부분의 행정소송이 3 심제로 바 뀌었다. 공정거래사건만 두 번 재판하는 건 원칙에 맞지 않는다. 더구나 과징금 징

기업의 법위반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견해도 존재한다．3）4）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심결제도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 거래법 집행과 관련한 현행법상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 이후，일본에 서의 최근 심판제도의 개선 및 폐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 이후 마 지막으로 우리나라 심결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 ㅍ．현행 공정거래법상의 심결제도

## 1．공정거래위원회의 지위

공정거래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서 국무총리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두고 있다（제35조）．이에 공정 거래위원회는 경쟁정책 다시 말해，공정거래법 집행의 전담기구로서 의 지위를 갖고 있다（제36조 참조）．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 관으로서 독립한 규제위원회로서의 성격을 갖는다．5）또한 공정거래위

수 규모가 수천억원대로 늘어나는 등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권석천，＂［권석천의 시시각각］기업에 3심제를 허하라＂，「중앙일보」 2014．3．19，30면）．
3）공정당국의 처분에 불복한 기업들이 세 번 재판받을 수 있는 3심제 움직임이 일 자 소비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이규하，＂공정위 제재，불복 소송＇3심제＂전 환．．＂＂중기 • 소비자 피해만 키우는 꼴＂＂，「아주경제」 2014．5．8）．
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3 심제 전환이 기업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효과는 있지만 소비자의 권리증진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2심제로 운영되던 절차에 1 심의 하급심이 추가될 경우 재판이 확정되기 위해 1 년 이상의 시일이 추가로 소 요돼 소송이 장기화되고 이는 기업의 법위반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비자 또 는 사업자의 피해구제가 지연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또한 경쟁법 분야 소송은 일반 행정소송과 달리 경제학적 지식과 국내외 시장상황 에 따른 경제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공정거래위원 회의 심결을 사실상 1 심과 같이 보아 현행 2 심제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한국소비 자단체협의회，＂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의 3심제 전환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입장＂， 2014．4．28）．
5）현실적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독립규제위원회로 재 편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용이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이 견해에 의하면， 독립규제위원회로 재편하기 위하여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원회는 각종 고시，지침，규정，규칙 등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기관 으로서의 성격과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권，과징금부과권，이행강제금 부과권，과태료부과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 격을 동시에 가진다．${ }^{6}$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 인，부위원장 1 일늘 포함한 9 인의 위원으 로 구성되며，그중 4 인은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제37조 제1항）．7） 위원의 임기와 신분이 보장되고（제39조，제40조），위원의 정치적 활동 이 금지된다（제41조）．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9 인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 와 상임위원 1 인을 포함한 위원 3 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가 있다（제 37조의2）．전원회의에서는 전원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 42 조 제 1 항）．소회의의 의사는 상 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동조 제2항）．

## 2．심사 및 심결절차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일정한 절차 에 의해 시정하는 수단을 통하여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역할

[^1]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 할이다.8) 이러한 절차는 크게 나누어 심사와 심결절차로 나눌 수 있 다. 심사절차는 법 위반의 협의가 있는 경우9)에 위반사실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서, 사건을 심결에 부의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심결절차는 당해 사건이 위원 회의 심결에 부의된 후에 일정한 기일에 위원과 당사자(심사관과 피 심인)가 심판정에서 변론을 행한 후에 심결이라는 형태로 결론을 내 리는 과정, 이른바 심판기능을 영위하는 단계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은 이른바 공정거래위원회의 준사법적 기능과 관련된 것인데, 심결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10)와 의결은 원칙적으 로 공개한다(제 43 조 제 1 항). 예외적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 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하 다(동 단서).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 개하지 아니한다(동조 제3항). 이는 위원이 신분상의 위협 등을 느끼 지 아니하며 합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 3. 심사 및 심결제도의 특징

1) 심사관에 의한 심사

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의하여 법 위반행위의 단서를 잡은 공정거래 위원회는 심사관에 의하여 심사가 이루어진다. 이 경우 조사를 위하 여 의견청취, 정보요구, 영치, 조사공무원의 현장조사 등이 인정되고 있다(제50조). 이와 같은 조사를 통하여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준사법
8) 정주환,「한국경제법」(세창출판사, 1994), 175면.
9)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와 신고인이 신고한 경우에 심사절차가 개시된다(공정거래법 제49조 제 1 항, 제 2 항).
10)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43조 제2항).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조사결과 법 위반에 대한 혐의사실 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무혐의조치를 하고, 시정조치의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함으로 써 심결안건으로서 정식부의한다.
2) 대심구조에 의한 심결절차

심결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절차를 말하는데, 심결절 차는 모두절차와 사실심리절차로 진행되고 구체적인 절차진행에 있어 서 대심구조를 이루고 있다. 즉, 구체적으로 인정신문, 심사관의 의견 진술, 피심인의 모두진술, 증거조사절차, 심사관의 조치의견 진술, 피 심인의 최후진술 등으로 이루어져 형사소소의 공판절차와 유사한 성 격을 가진다. ${ }^{11)}$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부의된 사건 및 심사관이 법 위반 사실의 조 사 후에 시정권고를 하였는데 피심인이 시정권고를 불수락한 사건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 의결은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그 의견서에 기명,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제 45 조 제 1 항).
3) 심결에 대한 불복절차
(1) 이의신청

공정거래법상 심결에 대한 불복절차는 이의신청과 불복의 소라고 하는 2 가지 절차가 있다. 이의신청은 피심인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뿐 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스스로 자신이 내린 처분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의신청은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 령 및 과태료 납부명령과 같은 종국적 처분에 대하여서만 인정된다.
11) 신현윤, 「경제법」(법문사, 2014), 383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 청을 할 수 있다（제50조 제1항）．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60 일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다만，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 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 일의 범위안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동조 제2항）．
（2）불복의 소
피심인은 의결에 의한 시정조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55 조）．불복의 소는 이의신청의 여부와 산관 업이 제기할 수 있다． 불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서 인정한 사실이 어느 정도 법원을 구속하는지가 문제된다．미국에서는 연방거래위원 회의 심판절차를 거친 심결은 선례로서의 가치를 가지고，그 인정사 실이 충분한 증거에 근거한 경우 심결취소소송에서 「실질적 증거의 원칙（Substantial Evidence Rule）」에 따라 법원을 구속한다．12）13）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구속력이 없고 법관의 자유심증에 기한 판 단이 이루어진다．${ }^{14)}$ 한편，심결은 대심구조에 의하여 충분히 증거를 음미하여 이루어진 것이고，공정거래위원회를 독립한 준사법적 행정

12）신현윤，전게서，401－402면．
13）미국에서는 재판절차에서의 증거법이 엄격하므로（예를 들면，전문증거 배제），실 질적 증거의 원칙이 적용되면 이러한 엄격한 증거법이 적용되지 않는 행정기관의 사실인정이 법원에서도 승인된다．그러나 재판절차에서 엄격한 증거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 증거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의 의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諏訪園貞明／西岡繁靕，＂我が国の審決等の取消訴訟における実質的証拠法則について＂，「判例タイムズ」第1092号（2002），27面，32面）．
14）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심사기능과 심결기능만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실제로 그 심결의 진행을 주관하는 제 1 차 결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심결활 동을 담당하는 중립적인 행정심판관 제도，또는 행정위원회 제도의 가장 큰 특색이 라고 하는 실질적 증거의 원칙 등 행정위원회를 충실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다（申鉉允，前揭論文，2211面）．

기관으로 운용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추정력은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15)}$ 생각건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정사실이 합리적인 한 그 인정을 시인하고，인정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 한 해서 다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되며，그 의미에서는 실질적 증거의 원칙에서 판단구조와 크게 다른 것은 아닐 것이다．16）17）

## III．일본의 심판제도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재의 심결제도와 유사한 심판제도를 가지고 있었다．이른바 사전심사형 심판제도이다．이와 같은 심판제도 를 지난 2005년 불복심사형 심판제도로 개정하였다．2013년에는 이와 같은 심판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일본에서의 심판제도를 둘러 싼 논의는 우리나라 심결제도의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 1．심판제도의 변화

1） 2005 년 개정전－사전심사형 심판제도

2005년 독점금지법 개정（이하＂2005년 개정＂）이전의 심판제도는 공 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의 심판절차를 거쳐 결정으로 배제조치 명령과 과징금납부 명령 등 처분을 실시하는 구조이었다（事前審査型審判方式）．구체적으로는 사업자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를 실시

15）신현윤，전게서， 418 면．
16）古城誠，＂独禁法の執行と司法審査の役割＂，「経済法学会年報」第53巻（2010），51面．
17）한편，EU에서 유럽위원회 결정이 취소된 테트라 라벨 사건（Case C－12／03P Com－ mission v．Tetra Lavel［2005］ 4 CMLR 573 ［2005］ECR I－987）에서 법원은 유럽위원 회 결정에 대하여 유럽위원회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 취소할 수 있다는 EU 의 판례법（manifest error rule）을 강조하고，합병사건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판단을 존중 해 달라고 하는 유럽위원회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이 결정을 취소한 사건이다．mani－ fest error rule은 실질적 증거의 원칙에 유사한 원칙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하고，해당 권고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심판절차를 생략하고 심결하고， 한편，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심판 개시결정을 하 고，심판을 경유한 후에 심결을 실시하는 것이다（심판의 도중에 다툼 을 그만 둔 경우에는「동의심결」18）이 된다）．이와 같은 사전심사형 심 판방식에서는 심리가 장기화하고 심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 쟁 상태를 조기에 회복할 수 없다는 점과 과징금 납부와 담합 사안에 서 지명 정지의 보류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본래 제도의 취지에 부합 하지 않는 심판이 증가한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2） 2005 년 개정
（1）불복심사형 심판제도로의 변경
2005년 개정에서 사후 심판절차로 변경되었다．즉，권고 및 심판절 차를 거치지 않고 배제조치 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해당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심판청구를 하고，심판에서 해당 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구조이었다（不服審査型審判方式）

일본에서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제도를 준사법적 기능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로서，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전 문성을 발휘하고 법 집행을 담당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라고 보았다．19）

18）일본의 동의심결은 미국의 동의심결제도를 받아들인 것이다．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법 위반이 발생하고 있다고＂믿을 만한 이유（reason to believe）＂가 있는 경 우에는 주장을 소장으로 발행할 수 있다．소장의 대상이 된 자가 FTC 의 주장을 받 아들일 경우에는 동의심결（consent agreement）을 체결할 수 있다．그 경우는 명령에 따라 사법상의 심사를 받을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 된다． FTC 가 이러한 동의 심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명령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30 일（또는 위원회가 지정 하는 기간）의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대상자가 FTC 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에는 심판절차（Administrative Trials）에 들어간다．위원회 집행규칙（Commission＇s Rules of Practice）에 따라 심판절차가 실시되고 심판관（administrative law judge（ALJ）에 의 해 판단이 이루어진다．
19）根岸哲編，「注釈 独占禁止法」（有斐閣，2009），671面．

2005년 개정 독점금지법 하에서의 일본의 심판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 가 지정하는 심판관20）이 주재하고 배제조치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피심인）가 위반 사실 의 존재 등에 대하여 다투고，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심사관이 위반사 실을 입증하고，심결을 내는 사후적인 불복신청절차로서 이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전속관할이 되는 동경 고등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지만 법원에서는 실질적 증거법칙（일본 개정전 독점금지법 제 80 조）과 신증거제출 제한（일본 개 정전 독점금지법 제8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실인정을 존중 하는 심리 및 재판이 이루어졌다．실질적 증거법칙은 준사법 절차（심 판）에 의한 사실인정이 이루어졌을 경우，그 판단을 존중하여 법원은 심판에서 조사된 증거에서 해당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 부만을 심사하고 해당 사실 인정에 합리성이 있으면 법원은 그것에 구속된다는 법리이다． 21 ）신증거제출 제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심판에서 조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증거를 소송에 있어서 제출하는 것이 제한되고 법원이 새로운 증거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려되고 있다．심 판절차에서 제출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소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 출하는 것을 자유롭게 허용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실인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실질적 증거법칙이 유명무실하게 된다．즉，실질 적 증거법칙을 인정하는 이상 신증거제출 제한은 그 당연한 귀결로서 인정되게 된다．22）

20）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관은 7인이다．통상 심판은 3 인의 심판관으로 성립하 는 합의체에서 이루어진다．
21）内田衡純／笹井かおり，＂公正取引委員会における審判制度の廃止～独占禁止法の一部 を改正する法律案～＂，「立法と調査」No．304（2010．5），44面。
22）根岸哲編，前揭書，781面。
（2）구체적인 심판절차의 내용
심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여기에서는 위원장 및 위원을 지칭）또는 심판관（일본 독점금지법 56조）은 공개 석상에서 심사관과 피심인 쌍방 의 주장，입증활동을 공평한 입장에서 심리하여 판단한다．
（1）심판절차는 공개가 원칙이며（일본 독점금지법 53조），기록된다（일 본 독점금지법 61조）．${ }^{23)}$ 게다가 독점금지법 70 조의 15 및 정보공개 법에 따라 논의나 증거 등의 사건기록에 대한 공개청구24）가 가 능하다．${ }^{25)}$
（2）심판절차에 대해 쌍방의 주장을 공평하게 제시하고 거기에서 나 온 증거만으로 판단을 내린다（일본 독점금지법 68조）．
（3）심결은 위원장 및 위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일본 독점금 지법 69조 1항）．또 심결서에는 사실과 법령의 적용이 명시되고， 또 위원 사이에서도 의견의 대립이 있을 때는，소수 의견을 부 기할 수도 있다（일본 독점금지법 70 조의 2 제 2 항）．

23）그와 더불어 피심인 등의 방어권도 인정된다（일본 독점금지법 제52조）「심판 절 차는 $\cdots$ 행정절차 중에서도 사법절차에 상당히 유사한 것이며，당사자에게 고지， 청문 및 방어의 기회를 주는 적정절차 보장의 이념의 충족을 지향하고 있다 $\cdots$ ， （東京高裁 平成 6年 2 月 判決）。
24）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제도에 대해서는 $「$ 그 내용을 피심인에게 정확하게 또한 충분히 전달시켜서 피심인의 방어에 편의를 부여함과 동시에 심판절차의 공정을 확보하고 적정한 심판을 기하는 것에 있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다（明治 商事審決取消請求事件＝東京高判 昭和 $46 \cdot 7 \cdot 17$（審決集 18 巻167面）．
25）심판 사건기록이 도쿄 고등법원에서 공개된 경우에는 사업자의 비밀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열람을 제 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 일단은 보호된다．그렇지만 제3자의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92조에서는 제3자에게는 소송기록 열람 제한의 주장이 인 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에 흠결이 있다고 할 것이다．그 점에서는 사건기록 이 소송기록으로서 열람 대상이 아님으로써 사업자의 비밀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藤田稔，＂公正取引委員会の審判の事件記録に対する情報公開法第3条•独占禁止法第69条•民事訴訟法第223条による開示請求と事業者の秘密の保護＂，「法政論叢」第29号（2004），59面）。

3）새로운 심판제도에 대한 논의
（1）2005년 개정법 부칙에 따른 논의

2005년 개정에 대해서는 경제계 등에서＂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것으로 2 년 이내에 근본적인 개혁을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고，부칙 제13조에 심판절차의 방식 등 남겨진 과 제에 대해 시행 후 2 년 이내에 재검토를 실시하는 규정이 포함되었 다．26）이에 따라 내각 관방장관의 사적 간담회인 독점금지법 기본문 제 간담회（이하，간담회）가 설치되어 2005년부터 2007년에 걸쳐 35 회 에 걸친 논의가 이루어졌다．간담회에서는 심판제도의 본연의 자세를 둘러싸고 주로（1）불복심사형 심판방식，（2）사전심사형 심판방식，（3） 지방법원에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의 3가지로 분류되어 비교 검토가 이루어졌다．이에 대한 상세는 다음 표와 같다．
＜독점금지법 기본문제 간담회에서의 논의 내용＞

| $\begin{aligned} & \text { 유 } \\ & \text { 형 } \end{aligned}$ | 불복심사형 심판방식 | 사전심사형 심판방식 | 지방 법원에 직접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장 } \\ & \text { 점 } \end{aligned}$ | －조기에 경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 <br> －위반금 납부를 보류 하기 위해 심판에서 다툴 유인이 생기지 않는다． | －불복심사형 심판방식 보다 적정절차가 보 장되는 동시에 진상 의 해명에 보다 적 합하다． | －처분기관인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독립한 법원이 처분을 함으 로써 공정하고 투명 한 판단이 확보된다． |

26）개정법 시행 후 2 년 이내에 신법의 시행상황，사회정세의 변화 등을 감안하고， 과징금에 관한 제도의 본연의 자세，위반행위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 기 위한 절차방식，심판절차 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추가하여，그 결과에 따라 필 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취지가 규정되었다．또한 참의원 경제산업위원회의 부대결 의에서 이 개정검토에 대하여＂심판부문의 분리 • 독립의 기본방향（在り方）등에 대 해 명확한 대응을 나타내는 것＂이 명기되었다．

| 유 <br> 형 | 불복심사형 심판방식 | 사전심사형 심판방식 | 지방 법원에 직접 취소 <br>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 |
| :--- | :--- | :--- | :--- |
|  | - 담합사안의 경우에 지 <br> 명 정지를 받는 시 <br> 기를 제어하기 위해 <br> 서 심판에서 다툴 유 <br> 인이 생기지 않는다. | - 행정과정, 재판과정 <br> 전체를 통해 볼 때, <br> 분쟁의 전문적 조기 <br> 해결을 도모난다는 심 <br> 판의 본래기능에 적 <br> 합하다. |  |

그 논의를 바탕으로 2007년 6월에 정리된 "독점금지법 기본문제 간담 회 보고서(이하, 보고서)"에서는 "2005년 개정에 의해 도입된 불복심사 형 심판방식은 처분의 조기화•심판 건수의 감소 등 일정한 성과를 올 리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에서 당분간은 이를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행정과정에서 준사법적 절차를 채용하고, 강제처분 자에게 충분히 주장, 입증의 기회를 주는 것에 의해 적정절차를 보장하 는 동시에 분쟁의 전문적 조기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조 건이 갖추어진 단계에서 사전심사형 심판방식을 다시 채용하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심판제도를 유지•활용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27）
심판제도의 기본방향과 관련하여서는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었다．그러한 의견은 크게 4 가지로 나눌 수 있다．첫째，심판을 거 치지 않고 행정처분을 신속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복심사형 심판 방식을 지지하는 견해이다．${ }^{28)}$ 둘째，대심구조 하에서의 주장•입증 등 을 통한 적정절차의 보장을 선호하여 사전심사형 심판방식을 선호하 는 견해이다．29）셋째，독립행정위원회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폐지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판제도의 폐지에 반대하고 사전심사형 심판방식에 복귀하여 개선책을 강구하자는 견해이다．${ }^{30)}$ 넷째，공정하 고 투명한 판단의 확보를 위해 심판제도를 폐지하고 행정처분에 불복 하는 경우에 지방법원에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을 지지하는 견해이다．${ }^{31)}$

27）独占禁止法基本問題䀐談会，「独占禁止法基本問題根談会報告書」，2007．6．26，23面．
28） 2005 년 독점금지법 개정에 의해 개정 전에는 심판계속 사건이 백수십건 심판기간 이 평균 2 년도 걸렸지만，개정 후에는 심판이 개시되는 비율이 $17.6 \%$ 에서 $2.2 \%$ 로 줄었다．법의 효과는 충분히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日本弁護士連合会，＂独占禁止法基本問題懇談会報告書に対する意見書＂，2007．8．23，6面）．
29）독점금지법 위반 피의사건 처리절차를 검토할 경우 절차의 실제 운용측면 외에， 행정에서 적정절차의 보장의 문제，경제의 글로벌화의 현상에 있어서의 독점금지법 절차법의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및 독점금지법의 시행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독 립행정위원회 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독점금지법 운용에 있 어서의 적정절차의 보장은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방어권의 보장으로서 중 요할 뿐 아니라，독점금지법 운용에 대한 사업자의 신뢰감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독 점금지법의 집행력 강화에 있다고 여겨진다（競争法研究協会，＂独占禁止法違反事件処理手続意見書＂，2008．10．20）．
30）독점금지법을 연구하는 유지학자들은 독립 행정위원회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폐 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하며 심판제도의 폐지에는 반대하고，사전 심사형 심판 방식으로 복귀하는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본론이라고 주장하였다．이에 대한 상 세는 独占禁止法を専門とする有志学者，「独占禁止法等の改正案に関する意見」， 2008.
4．14．＜http：／／www．pluto．dti．ne．jp／～funada／0804HP－ikensho－kakuteiban．pdf＞．
31）심판제도를 대폭 개선한 「수정 사전심사형 심판방식，이라 하더라도 다시금 사법 판단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을 붙인 후에 지방법원에 직접 취소소 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社団法人 経済同友会， ＂独占禁止法における審判制度についての意見－公正取引委員会が担ら役割と審判制
（2）2009년 개정법 부칙
2009년 개정 독점금지법의 부칙 및 중의원 및 참의원의 경제산업위 원회（衆参経済産業委員会）의 부대결의 등에 따라 심판제도의 재검토를 포함하여 독점금지법의 개정을 위한 당시 집권여당 내에서 검토가 진 행되었으나 심판제도의 기본방향에 관해서는 많은 논점이 남아 더욱 검토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2009 년 독점금지법 개정 （이하， 2009 년 개정）에서는 보류가 되었다．${ }^{32 \text { ）} 2009 \text { 년 개정법 부칙 제20 }}$ 조 제 1 항에서＂심판절차에 관련된 규정에 대해 전면에 걸쳐 개정할 것이라고 하며，平成 21 년（2009년）도 중에 검토를 추가하고，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또，2009년 개정에서 중의원 및 참의원의 경제 산업위원회의 부대결의에서＂현행 의 심판제도를 현재 그대로 존속하는 것 및 平成 17 년（2005년）개정 이전의 사전심판제도로 돌아가지 않도록 심판제도의 근본적인 제도 변경을 하는 것＂을 명기하였다．

度の意義－＂，2008．11．27，6面）．동 단체는＂구체적으로는 배제조치명령／과징금 납 부통고 후 권고불승낙／통고불승낙 그리고 심판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 공정위는 행정처분으로서 배제조치명령／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리고，그 후 지방법원에 취소소 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하는 것을 제안한다．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 우의 조건으로서（1）배제조치명령과 과징금납부 통고와 함께 불승낙（일방에 대해 서만 심판을 선택한다고 할 수는 없다．），（2）리니언시 및 처분감면조치는 불적응하 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2） 2009 년 개정에서는 2005년 개정법의 부칙에 기록된 것 중 과징금에 관한 제도의 모습（在り方），위반 행위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한 절차방식（在 り方）등 심판절차 이외의 것에 대하여 개정이 이루어졌다．과징금의 경우에는 과 징금의 대상이 되는 행위유형을 확대하였다．새로이 배제형 사적독점，부당염매，차 별대가，공동거래거절，재판매가격구속（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우월적 지위의 남용이 추가되었다．과징금감면제도의 경우에도 공동신청과 감면신청자수를 최대 5 사까지 확대하고 있다．과징금 납부명령 등에 관련되는 제척기간도 3 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있다（公正取引委員会事務総局，＂独占禁止法改正法の概要＂， 2009. 12，5面，17面，28面）．
4) 2013년 개정 - 심판제도의 폐지
(1) 경 과

한편, 2009년 12월 9일 정책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관과 법 관을 겸하고 있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심판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나타났다. 그리고 2010년 3월 10 일 및 11일의 정책회의에서 구체적인 개정내용에 대해 승낙을 얻은 후, 본 법률안은 제 174 회 국회에 제출 되었다. 본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1)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심판제 도를 폐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심사에 대해서 는 동경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것, (2)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 처분을 실시할 때의 사전절차(이하, 처분 전 절차)로서 행정절차법 (1993년 법률 제88호)상의 청문절차에서의 절차보장 수준을 기본으로 한 의견청취 절차로 하는 것이다. 이후 개정 법안은 2013년 5월 24일 에 정부에서 제183회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 후 제184회 국회를 거쳐 제185회 국회에서 성립되었다.
(2) 2013년 개정 독점금지법의 내용

2013년 12월 7일 독점금지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의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심판제도를 폐지하고, 판결과 관련된 항고 소송 1 심 재판권이 동경 고등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폐지한다.

둘째, 법원에서의 전문성 확보 등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배제조치 명령 등에 관련된 항고 소송에 대해서는 동경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함과 동시에, 동경 지방법원에서는 3 명 또는 5 명의 법관의 합의체에 의한 심리 및 재판을 한다.

셋째，적정절차의 확보의 관점에서 배제조치 명령 등에 관한 의견청 취 절차에 대하여 예정된 배제조치 명령의 내용 등의 설명，증거의 열람•등사에 관련된 규정 등의 정비를 실시한다．

넷째，기타 필요한 개정을 한다．
（3）심판제도 폐지에 대한 반대의견
심판제도의 폐지가 일본 경제단체연합의＂독점금지법의 근본개정을 위한 제언＂（2007년 11월 20일）등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스스로 심사 （＝행정조사）하여 배제조치 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리는데，심판 에서 스스로 행한 행정처분의 당부를 판단한다는 구조 자체가 부당하 다고 하여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비판에 기인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이러한 비판을 언론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독점금지법상 심판제도가 폐지되었다는 것이다．원래 행정 심판 제도는 행정청이 불복신청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고，행정절차이 기 때문에 법원과 똑같이 제3자적 입장에서 심리될 수 없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이러한 견해에 의하면，사업자가 심판에 불만이 있어 재 판을 청구하기 이전에 그 심판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하는 심판제도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공정거래 위원회가 배제조치 명령을 내린 후에 명령을 받은 사업자의 청구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심판에서 심리를 실시하는 구조는 다음과 같 은 이유에서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첫째，일반론으로서， 어떤 사람이라도 혹은 어떤 조직，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같은 행정청에서도 같은 사항을 다시금 1 번 재고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 다．33）34）둘째，공정거래위원회 이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청

[^2]이 행한 행정상의 활동에 대해 다투기 위해 처분한 해당 행정청（처분 행정청）에 대한＂이의신청＂이라는 수단이 있다（행정불복심사법 3조 이 하， 45 조 이하）．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같은 행정청에 같은 사건에 대해 2 회 불복신청 35 ）을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은 현행 행정구 제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것이다（다만，종래 일본 독점금지법 에 있어서는＂실질적 증거36）의 법칙＂37）과＂심급생략＂38）이 있다는 점 등의 특수성이 있었다）．행정청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도 의미 없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일반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다．셋째，공정거래 위원회가 배제조치 명령을 내렸을 때 일단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 단하였으니，심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

은 심판내용의 변경 등이 이루어졌다고 한다（舟田正之，前揭資料）．
（1）심판의 결과，위반행위 없다고 여겨진 사례 및 심판개시 결정이 취소된 사례는 모두 13건이다．
（2）당초（2005년 개정 전의 권고）의 판단과 다른 판결의 예도 많이 있다．그 내역은 권고（심판개시 결정）시에 위반이라고 인정한 행위의 일부를 결정 시 위반행위 없 다고 한 것，적용 법조의 변경，과징금의 감액 등이다．
（3）심판관의 판단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다른 예도 있다．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정 방안을 검토하고 수정을 더해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35）행정상 불복신청의 존재 이유로는 첫째，간이 신속한 구제，둘째，당해 처분의 위 법 여부뿐만 아니라 당•부당까지 판단，셋째，행정 측은 자기 처분을 재검토할 기 회가 주어지는 것을 들 수 있다．한편，그 단점으로서，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에서 제3자성이 약하고，법원만큼 엄격한 룰이 없어서 당사자의 눈으로 보아 신뢰성의 결여 등이다（塩野宏，「行政法 П」（有斐閣，第4版），2005，8面 이하）．
36）실질적인 증거라는 것은 심결 인정사실의 합리적 기초로 되는 증거의 의미이다． 즉，그 증거에 기하여 이성 있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그 사실인정에 도달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증거는 실질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日本出版協会事件東京高判 昭和 28年 8月 29日）。
37）결정 취소소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정한 사실에 대해 실질적인 증거가 있 을 때는 법원을 구속하다（일본 독점금지법 제80조 1항）．실질적인 증거의 유무는 법원이 판단한다（일본 독점금지법 제80조 2항）．
38）종래 일본 독점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다투는 경우 동경 고등법 원이 1심이었다（일본 독점금지법 제85조）．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2005년 독 점금지법 개정에 의해 개선되어 심급생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민사사건의 경우에 도 2013년 개정에 의하여 심급생략 없이 제 1 심을 동경 지방법원이 담당하는 것으 로 되었다．

한 절차라고 비판하는 것은 원래 행정은 일단 결정을 내렸으면 이를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행정 당국의 부적절한 또는 잘못된 대응 을 그대로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것이다．
（4）심판제도 폐지 이후의 과제
가．적정절차의 보장

의견청취 절차에서는，취소소송으로의 인계 후에 증거의 충분성과 쟁점의 성숙성 면에서 문제는 없는지，이러한 처분 전 절차에서 신속 하고 적정한 법원에서의 심리를 가능하게 하는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왜냐하면，증거의 충분성，쟁점의 성숙성을 높이려 고 하면 할수록 시간이 걸리고，이전의 사전심사형 심판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딜레마가 생긴다．${ }^{39)}$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제 1 심 관할권이 동경 고등 법원 아니라 동경 지방법원으로 되는 것은 2심제에서 3심제로 심급의 이익을 끌어올리는 데서，적정절차의 보장의 관점에서 보면 개선이라 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그러나，전문성 높은 판단의 확보라는 관 점에서 문제는 없는 것일까．

또한，사안처리의 신속성 확보라는 관점에서도 문제는 없는 것일까． 전문성 높은 판단의 확보도 사안처리의 신속성 확보도，적정절차의 보장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사전심사형 심판제도의 시대에는 경쟁질서의 회복을 유연하고 신 속•적절히 실현하기 위해서 성질상 화해에 유사한 권고심결（2005년 개정 전의 48 조 $)^{40)}$ 이나 동의심결（동 53 조의 3 ）의 제도가 존재하였는데，

39）根岸 哲，＂第5回—審判制度の廃止と事前手続の充実等＂，「独禁法研究会」，2010．9． 9，4面．
40）권고심결은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독점금지법 제 48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 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취하야 함을 권고하고，그 자가 권고를 수락했을 때，동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대해 직접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심판제도 폐지 법안에는 이런 제도를 도입할 여지가 없고，이 점에서 적정절차 보장의 관점에서 문제는 없을 것인가．

나．전문성이 높은 판단의 확보

심판제도는 공개되어 있고，심결에 소수의견을 부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 리의 대상으로 한다．심판은 위법성 외에 적절성，타당성도 심리의 대 상이 된다．석명처분이 발동된다고 하더라도，공정거래위원회는 원인 이 되는 사실 기타 처분의 이유를 명확하게 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충 분하고，심판절차 하에서 두는 정도로 풍부한 증거제출도 기대할 수 없다．많은 다른 사건과 동시에 독점금지법 위반 사건도 심리하는 법 원이 심판제도로 대체하여 전문성 높은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아닌가라는 염려가 된다．41）

다．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행정위원회의 의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행정위원회로 조직되어 있는 것은，다음과 같 은 근거로 그 직권 행사를 정치적 당파성으로부터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1）독점금지법은 법률과 경제에 관한 고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에 기초로 운영돼야 하고，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전문성의 발휘 를 기대한다면，합의제 조직형태를 채용하고，그 직권 행사를 정 치적 당파성으로부터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권고와 동일한 취지의 심 결을 실시하는 것이다．
41）根岸 哲，前揭資料，4－5面．
（2）공정거래위원회는 대심구조42）하에서 공개 심판정에서 방어 권이 보장된 피심인의 비판을 충분히 받은 증거에 근거하여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이에 기하여 법을 적용하는 준사법적 절차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직권 행사의 독립성이 요 구된다．
（3）독점금지법은 우리나라가 채용하는 시장경제 체제의 기본적인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이며，그 운용은 정치적 영향에 서 독립하고，계속적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43）

## IV．심결제도의 합리적인 대안에 대한 검토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심결제도에 대한 개요와 최근 우리나라의 심결제도에 해당하는 심판제도에 대하여 계속적인 독점금지법 개정 을 해 오고 있는 일본 독점금지법상의 심판제도의 변화내용에 대하 여 검토해 보았다．일본에서는 심판제도에 대한 바람직한 모습을 찾기 위한 폭 넓은 논의와 법개정 속에서 2013년 심판제도를 폐지 하는 독점금지법 개정을 단행한 바 있다．일본에서의 수많은 논의 는 우리나라의 심결제도의 바람직한 개정을 위한 여러 가지 재료를 제시해 주고 있다．이하에서는 간략하게 우리나라의 심결제도의 나 아갈 방향에 대하여 일본의 법개정을 참조하면서 논의를 전개해 보 고자 한다．

42）공정거래위원회 심결절차를 준사법절차라고 하지만，기본적으로는 행정처분의 사 전절차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통상 법원에서 실시하는 사법절차와는 구분되 어야 한다．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이 행정처분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을 가지 면서도 사안에 대해 공정한 판단과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 요청을 참작 하여 적정한 결정구조와 절차를 형성해 나갈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申鉉允，前揭論文， 2205 面）．
43）根岸 哲，前揭資料，5面．

## 1．현행 심결제도의 보완방안

## 1）심결의 독립성

일반적으로 공정거래법상의 심결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 한 것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심결에 있어서 정치로부터의 독립성이 다．즉，공정거래법을 운용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어서 그 직권 행 사를 정치적 당파성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은 절대불가결한 요청이 다．특히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치로부터의 독립성이 다소 취약한 모습을 보여 왔다．과거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이른바 정부의 친기업（friendly business）정책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기업 집단 관련 공정거래법의 집행을 손 놓고，물가안정에 주력한 것도 그 러한 예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44)}$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치적으로 독립 된 위상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왔다기보다는 지속적으 로 정권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아왔고，그 영향에 의해 역할이 강 화되기도 하고 쇠락하기도 하여 진정한 의미의 독립규제기관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45）

44）영국 GCR（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은 2013년 경쟁분야 평가에서 우리나라를 공정정책 국제등급이 ‘아주 우수（Very Good）＇그룹인＇별（ $\star$ ） 4 개＇등급으로 평가하였 다．이는 일본，영국 등과 같은 단계이다． 1 년만에＇별（ $\star$ ） 3 개＇등급인＇우수（Good）＇ 그룹에서 다시금 한 단계 올라선 것이다． GCR 은 한국 공정정책 당국인 공정거래 위원회의 등급을 종전 ‘별 세개 반’에서 ‘별 네 개’로 상향 발표하면서＂공정위가 다시 확실하게 아시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반독점 집행기관으로 명성을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정부정책에서 공정위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남겼다．GCR은 국내 변호사의 말을 빌어＂정치•경제적 환경 내에서 공정위가 경쟁법에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의제에 주도될 수 있다는 우 려도 있다＂고 지적했다（우경희，＂［단독］한국＇공정 정책등급＇ 1 년만에＇$\star 4$＇회복 노 대래 위원장＂진입규제•물가기관 오명 씻고 비정상의 정상화 국제사회서 인정＂＂，「머니투데이」，2014．6．9，1면）．
45）서성아，＂독립규제기관의 독립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공정거래위원회를 중 심으로＂，「한국행정학보」 제45권 제2호（2011），242면．저자는 독립성이라는 용어를 영어의 independence（독립성）과 autonomy（자율성）를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同，243면）．

특정 정치세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간섭하여 어떤 위반사건을 거론 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공정거래법의 운용은 그때그때의 정치적 영향에서 독립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또한 계 속적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46）47）
심결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결정을 담당하는 자의 신분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상 심정을 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되어 있고 1 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정함으로써（제39조），심결업무를 최대한 6년 이상 맡지 못하도록 제한 되어 있다．48）심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예컨대，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46）일본의 한 학자는 정치적 세력의 의향은 경쟁정책의 집행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마이너스로 작동한다고 한다．예컨대，정치가들은 소비자의 이익이나 경쟁의 촉진 등보다는 각 업계의 기업의 이익 쪽을 중시할 가능성이 있다．독점금지법에 대해 말하면，이 법은＂경쟁자 보호＂가 아니라＂경쟁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부 당염가 판매의 규제는 독점금지법에 있어서는＂공정한 경쟁＂의 유지를 위해 중요 하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기업•유력기업의 저렴한 가격에 대해 중소기업의 높 은 가격을 지키려는 방향으로 작동할 우려가 크다고 한다．부당염매의 규제를 중소 기업이라는＂경쟁자 보호＂를 위해 이용한다는 것이다．그 결과 독점금지법 위반이 되는 부당염가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당한다고는 분명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와 주의에 의해서 저가격으로 판매하는 기업 을 억제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가격경쟁은 점차 위축되어 소비자 이익에 반할 우려 가 강하다고 한다（舟田正之，前揭資料）．
47）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규정이 있다．즉，＂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독립하여 그 직권을 실시한다＂（일본 독점금지법 28조）이라는 규정은 공 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이와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독 립성•전문성을 확보하고 존중하기 위해 위원장과 위원 4명은 법률•경제에 관한 학식 경험자로 뽑아야 하며，그 임기 중에는 만일 때의 내각의 정치적 방침에 반하 는 운용을 해도 파면되지 못하는 신분보장 등이 정해져 있다（일본 독점금지법 27～44 조）．한편 일본에서는 소비자청이 설치되면서 새로이 소비자위원회가 구성되었는 데，소비자위원회에 대해서도 위원의 직권 행사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다（소비자 청 및 소비자 위원회 설치법 제7조）．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와 달리 독립성 을 담보하기 위한 신분보장 등의 제반 규정，기타 독립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제도 적 구조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
48）물론，해석상 상임위원 6 년，부원장 6 년 원장 6 년으로 최대 18 년의 임기 동안 심 결을 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그러나 이 경우에는 상임 위원이 부원장이나 원장에 임명되는 경우에 한한다．

위원은 상원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임기는 7년이며，공 무에 관한 불법행위 등의 경우 외에는 그 뜻에 반하여 파면되지 않고 직권 행사의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다．다시 말해，미국 연방거래위원 회 위원의 경우 1 차에 한하여 연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외 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생각하면，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를 최 장 6 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근거를 찾기가 곤란한 불필요 한 제한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한편，심결의 독립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공정거래위원회 내부에서 소추기능을 담당하는 심사관과 심결기능을 담당하는 위원 사이에 인사 상 직능이 분리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직능분리의 원칙）．49）현재 상임위 원은 1 금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함으로서 위원의 임명이 사 무처 소속 2 급 공무원의 승진이라는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50)}$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 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제 40 조）．그러나 실제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임기를 채울 수 없이 퇴직한 사례도 발견되고 있 어 심결의 독립성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51）

49）미국의 경우 행정기관의 사법화의 일환으로서 연방거래위원회가 조사•처리기능 과 심결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어 대립 당사자 구조 속에서 소추자로서의 심사관과 그 상대방인 피심인이 대치하고 입증 활동을 실시하는 중립적 지위에 있는 행정심 판관（Administrative Law Judge）이 청문을 주재하면서 그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바 탕으로 제1차 결정（initial decision）을 내리고 있다．행정심판관의 결정은 법률상으로 는 어디까지나 제1차 결정에 불과해 심사청구 또는 행정기관의 직권에 의한 심사 로 취소될 수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경우，행정심판관의 결정이 그대로 행정기관 의 최종 결정이다．
연방거래위원회 내부에서는 사건조사 및 기소를 담당하는 원고의 역할을 담당하는 심사관과 행정심판을 관장하는 행정심판관의 엄격한 독립성 유지를 통해 행정심판 과정에서 여러가지 제기되는 심판관의 중립성•공정성의 결여에 대한 시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행정심판관에 대한 근거조문은 미국연방행정절차법（Admi－ nistrative Procedure Act：APA）제556조이다．
50）申鉉允，前揭論文，2209面。
51）申鉉允，前揭論文，2209面。
2) 심결의 공정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은 법원의 판결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공정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심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대심구조형 심결절차와 심결에 있어서의 청문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심구조는 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 사업자인 피 심인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52)

공정거래법상의 심결제도에 있어서 심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심리와 의결의 공개 및 의결서의 작성

현행 공정거래법 및 절차법상 공정거래위원회 심결구조는 심사관과 피심인간에 대심구조가 형성되어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결정을 주재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 다(제43조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그 의결서에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제45조 제1항).
(2) 청문의 기회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조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 (조사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당해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49조 제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52조 제1항). 당사자 또는 이해
52) 권오승, 「경제법」(법문사, 2014), 402면.

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동조 제2항).
(3) 자료의 요청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에 의한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 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52조의2).
(4) 공정성을 위한 심결제도의 보완필요성

가. 증거에 의한 심결제도의 운용
심결제도에서 심사관과 피심인은 주장을 공평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심결에서 제시되지 아니 한 증 거를 새로이 심결취소소송에서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이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심결제도에 있어서 이른바 실질적 증거 의 원칙(Substantial Evidence Rule)이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심 결제도를 보다 사법제도에 가깝게 운영하고 심결제도에서 인정된 합 리적인 증거가 법원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증거의 원칙을 규정 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적어도 증거에 의한 심결제도의 운용이 공 정거래법상 포함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 }^{53)}$

나. 의결서상의 소수의견의 기재
우리 공정거래법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 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53) 2013년 개정 전 일본 독점금지법 제68조(2005년 개정 전에는 구 54조의3)에서는 "심결에서는‥심판 절차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명기 돼 있었다. 절차의 공정성 •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을 명기 할 필요가 있다.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3조 제1항）．그러나 의결 에 있어서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 43조 제3항）．${ }^{54)}$ 이와 같이 의결의 합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 반적인 합의체의 의결형성에 있어서 일반적인 규정으로 보인다．다만， 의결의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함을 위해서는 의결서에 사실과 법령의 적용이 명시되고，또 위원 사이에서도 의견의 대립이 있을 때에는 소 수의견을 부기할 수도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55）56）

## 2．심결제도의 개혁을 위한 검토

1）심결제도의 바람직한 형태－사전심사형 심결제도와 불복심사형 심결제도

일본에서의 심판제도의 변혁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심결제도의 근본 적인 개정의 문제에 대하여 간략히 생각해 보고자 한다．우선，지금의 사전심사형 심결제도를 불복심사형 심결제도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가 하는 것이다．일본에서는 2005년 개정 전 독점금지법에서는 공정 거래위원회의 권고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심판절차를 생략하고 심결하 고，한편，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심판 개시결정을 하고，심판을 경유한 후에 심결을 실시하고 있었다．그러나 이러한 사

54）이와 유사하게 법원조직법 제65조는＂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55）2013년 개정 전 일본 독점금지법 제70조의 2 제 2 항 참조．
56）독점금지법은 위반 사건의 심리에서 복잡한 경제 실태를 배경으로 다각적인 관 점에서 개별 사안의 사실인정과 법령의 적용을 통해 룰을 설정하는 판례법적 성격 이 강한 법률이므로 위원회의 최종결정에 소수의견을 부기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 하고，합의제 독립행정위원회의 존재 의의와도 관계하는 문제이다．미국의 대법원 판결 및 FTC 심결에 있어서 소수의견의 부기의 유용성．중요성은 매우 커서 시장 이 복잡하게 되는 정보공개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규정의 폐지는 의문이다（競争法研究協会，＂H25年独禁法改正法案の国会審議と残された問題【New！】＂，2014．5． 14. ＜http：／／www．jcl．gr．jp／proposal／006＿proposal．php＞）．

전심사형 심판방식에서는 심리가 장기화하고 심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쟁 상태를 조기에 회복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2005년 불복심사형 심판제도로 변경하였다．사후적인 불복신청절차란 배제조 치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피심인）가 위반 사실의 존재 등에 대하여 다투고，해당 사건 을 담당하는 심사관이 위반사실을 입증하고，심결을 내는 것이다．우 리나라의 공정거래법상의 심결제도는 일본의 2005년 개정 전 독점금 지법상의 심판제도와 유사한 사전심사형 심결제도라고 할 수 있다．특 히，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심결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둠으로써 일본 의 2005년 개정법상의 심판제도와 유사한 불복심사형 심결제도도 함 께 운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심결취소송에 대한 1심 전속관할권－서울고등법원인가 서울 지방법원인가

일본의 2013년 개정 독점금지법은 심판제도를 폐지하고 있다．심판 폐지에 의해 심판에 대신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취소소 송이라는 지방법원 수준의 소송의 장이 마련되고 있다．그러나 취소 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사소송의 피고와 마찬가지로 쟁점에 대 해 수동적 대응을 하는 것에 그치고，취소소송을 가지고 형사소송적 인 심판에 대체할 수는 없다．${ }^{57)}$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생 각해 볼 때，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제도 를 폐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그러나 심결제도가 갖는 여 러 가지 장점 즉，법원의 정식재판에 의할 때 보다 비용절감 및 시간 절약 등의 장점을 생각해 볼 때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 보다는 오히 려 합리적인 보완을 하여 이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된다．

57）平林英勝，＂公正取引委員会の審判廃止がもたらすもの＂，「筑波ロー・ジャーナル」第 4号（2008），46面．

다만, 심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취소소송에 대한 1심법 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서울지방법원으로 할 것인 가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피심인인 사업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생각해 보면 1심법원을 서울지방법원으로 하는 것이 보다 바 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그와 같이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에 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다만, 그러한 검토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 를 검토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3) 행정심판제도의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제도에 있어서 심사관과 위원들의 이른바 직 능구분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 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결제도의 운용을 위해서는 행정 심판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관 과 다른 존재로서의 중립적인 행정심판관을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토 론 문

김 두 진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손 교수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토론에 갈음하여 다음 수개 점 에 관하여 코멘트를 하고자 합니다.

1. 일본의 제도 변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평가

최근 공정취인위원회의 심판제도의 폐지와 불복의 소송의 3심제화 를 내용으로 하는 일본 사적 독점금지법의 개정이 우리 입법부의 동 일취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출의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하여 우리가 참고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 의 경쟁법집행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집행에 비교하여 더 소극적이고 활발하지 못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함. 즉 일본의 제도 변경을 우리가 참고하기에는 그러한 가치상 한계 가 존재함.
2. 기관의 중립성 확보의 전제조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가 심결의 공 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됨. 우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미국식의 독립규제위원회화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임. 행정부 소속의 합의제 행정청으로서의 공정거래위원회 로서는 아무래도 정치적 중립성과 심결의 독립성 유지에 힘이 부침.
3. 임기제

더불어 공정거래위원장과 위원의 임기제가 충실히 존중되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할 것임.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이 현재 1 급 상 당의 고위공무원인데 적어도 차관급으로 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상적 인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규제위원회화하여 국회에 의하여 선출 되도록 하고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임.
4. 실질적 증거원칙

손 교수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있어서 실질적 증거원칙이 적 용되어야 하고 이를 공정거래법에서 명시적으로 선언할 필요를 제안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들은 법관의 자격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행정공무원으로 보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그러한 입법 이 적절한지는 의문임. 또한 적법절차의 요청과 당사자의 절차적 기 본권의 보장이라는 가치의 무한한 보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의 신속성과 법위반행위에 의한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와는 상반되 는 가치임. 물론 어느 일방의 목적을 전혀 무시하면 아니 되겠으며 전 자와 후자의 요청은 상호 조화되어야 할 것임.
5. 결론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제도 자체에 대하여 보완과 수 정을 통하여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추구하여야 하지만, 심결에 대 한 불복의 소의 3 심제화는 그간의 공정거래법의 적극적 공적 집행이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받아오던 장점을 없애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농후함.

## 토 론 문

## 공정위 처분 3 심제 개정안의 타당성

소비자권익을 중심으로

윤 소 정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변호사)

최근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한다) 개정안의 요지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 관할로 하는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3심제로 변경하는 데에 있다. 이에 대하여 개정이유에서는 기존 2 심제는 소송의 3심제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앞서 발제문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우리나라 헌법은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1 회 이상의 사실 심 판단을 받을 권리를 재판청구권의 내용으로 보장하고 있지 지방법 원-고등법원-대법원으로 구성된 3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 지는 않다.

결국 3심제의 도입은 헌법적 요청이 아니라 입법형성권자의 재량에 따라 필요한 경우 2심으로 사법절차를 종결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 때 3심제를 통하여 당사자가 법원에서 충분한 심리를 받을 기회를 보 장하는 데에 중점을 둘 것인지, 2심제를 통하여 특수한 상황에서의 효율적인 입법목적의 달성을 꾀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권자가 이익형 량을 통해 결정할 문제인 것이다.

본 토론자는 후자의 견지에서 공정위 심결에 대한 불복소송은 기존과 같이 2심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당위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 1. 경제법 분야의 특수성

경제법 분야는 일반 행정소송과는 달리 경제학적 지식과 국내외 시장 상황에 따른 경제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기초로 시장현실과 규제법 간 적절한 이익형량을 하는 능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 쟁법 분야 전문 행정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문성에 기반한 충분한 사 실조사 후 심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정위의 심결을 사실상 1심 과 같이 보아 이후 2심에 걸친 불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쟁법 분야는 시장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반경쟁 행위로 인 한 이익 또는 손해가 기간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렇기에 위법행위에 대한 빠르고 단호한 조치를 통하여 법적 지위를 조속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경쟁법 분야에 대하여 아직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하급심이 불복 과정에 새로이 추가되어 분쟁의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그로 인해 추가로 지 출되는 사회적 비용 및 이해당사자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한 충 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또한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처분으로 인한 사인의 법익 침해에 대한 불복수단의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다. 공정위의 처분 은 헌법 제 119 조에 따른 경제의 규제와 조정의 취지에서 경제정책실 현의 수단으로 행해지는 것이므로 불복절차의 과정 및 결과가 경제정 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복 기회를 확대하여 피심 인의 권리구제를 증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하나 공정위 처분 의 갖는 전사회적•공익적 의미에 대하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2. 소송 장기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

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목적의 각종 법률에 규정된 의무조항을 위반하는 사업 자는 여전히 많다. 소비자들이 법위반행위를 한 기업들에 대하여 공 정위 심결을 기초사실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공정위 처분이 적 법하였는가 여부는 소비자들의 민사소송에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 런데 소송이 장기화되고 피심인의 불복 기회가 많아질 경우 법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들은 방어 기간이 길어진다는 이익을 얻으나, 기업 의 법위반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가 지연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군다나 사업자와 소 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사업자는 증거우월적 지위에 있는 반면 소비자는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바,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물적•심적으로 손해를 입는 쪽은 소비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 을 알고 있는 기업은 손해배상이 늦어짐에 따라 소비자들이 갖고 있 는 입증자료들이 사라져 손해배상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인 지하고 전략적으로 배상지연 목적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소비자 관련법 위반에 대한 심결이 아니더라도 기 업간 부당한 공동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 위 등 각종 위반행위를 통해 형성된 불공정한 시장에서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은 소비자이다. 소비자들은 기업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주체이나, 위와 같은 기업들의 반경쟁행위로 인하여 보다 저렴하고 나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소 비자들이 기업의 담합 등으로 인해 실제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손해액 조차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소비자가 기 업의 반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반경쟁행위의 조속한 중단 및 재발 방지가 소비자 권익 증진에 가장 부합할 것이나, 기업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개시하고 미확정 상태를 장기화함으로써 반경 쟁행위로 인한 부당한 이익 취득을 장기화하는 반사적 이익을 얻고자 할 것이다.

가격형성, 신제품의 개발, 기업의 성장과 도태 등 시장의 흐름을 결 정하는 것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최종선택권을 가지고 있 는 소비자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나, 아직 우리나라는 기업 주도적 소비시장에 머물러 있고 소비자는 선택권자의 지위보다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수동적 객체의 지위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그 근저에는 이윤창출을 위해 불공정행위 등 법위반 행위를 자행해온 기업경영현실이 있고, 시장질서의 축이 소비자 중심 으로 옮겨오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시간과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공정위가 해야 할 일이 많다. 기업 규제 완화를 외치 며 규제기관으로서의 공정위의 역할을 축소시킬 시점은 아닌 것이다.

## 3.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에 관한 독자적 행정기능을 수행하면서 준입 법기능 및 준사법기능까지 함께 갖는 행정기관이다. 이는 경제질서 규제 및 경제민주화라는 헌법가치 실현을 위하여 입법자가 공정위에 게 부여한 예외적 권한으로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라는 공정위의 행 정기능 실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공정위의 처분에 대하여 3심의 불복절차를 둠으로서 사실상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약 화시킬 경우 경제규제 독립위원회로서의 행정기능까지 함께 약화될 것이고 규제기관이라는 공정위의 본질적 기능 수행이 어려워져 국가 정책에 따른 경제질서 규제에 난항을 격을 우려가 있다.

최근 기업규제완화의 흐름에 공정위의 제제기능 약화를 수반한 3심 제 도입이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규제완화는 불필요한 사 회적 비용 절감도 하나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3심제

의 도입으로 지난 수십년간 경제 전문 행정청으로서 수행해온 공정위 의 전문성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할 것이고, 행정처분에 대한 장 기적인 분쟁으로 사회적•국가적 비용 지출이 오히려 증가하게 될 것 이다.

## 4. 외국 입법례

이번 개정안은 개정이유에서 일본 공정위(공정취인위원회)의 시정명 령에 대한 불복소송이 3심제로 개정된 사례를 근거로 들고 있다. 그 러나 일본 외에는 3 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고, 미국, 프 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2심제를 택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위 개정은 작년에 이루어진 것이며, 개정 과정에서도 뜨 거운 찬반 논쟁이 있었으며, 실제 일본의 법 개정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본의 법 개정이 성공적 이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일본이 개정하였으므로 우리나라도 그와 같이 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직 이른 주장일 것이다.

## 5. 공정위 심결 절차에 대한 개선 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업무를 행하는 행정기관이자 불리한 행정처 분을 하고 사실상 1 심에 준하는 판단을 하는 준사법기관으로 기능하 고 있는 바, 이번 3심제 개정의 논의는 공정위가 준사법기관으로서 충분한 절차보장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 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전문 성•효율성과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절차적 엄격성 사이에서 공정위가 양 기능을 흠결없이 수행하기 위한 앞으로의 개선과제라 할 것이다.1)

[^3]다만 현재 공정위의 심결절차에 있어 판단주체의 전문성,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절차에 대한 보장이 모두 미흡 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바, 공정위가 준사법기관으로서 정상적 기능을 하기 위하여는 위 비판에 대한 세부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위원 구성의 독립성 보장(임명절차, 임기, 지위 등), 대 심구조의 확보-소추자와 심판자의 분리-, 피심인의 의견진술권의 충분 한 보장, 의견진술기한을 충분하게 제공할 것, 대리인(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 히 이와 같은 피심인의 권리와 직결된 구체적 절차는 규칙이 아닌 법 률로 명시하여 절차 보장에 더욱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 토 론 문

## 조 성 국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I. 서 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절차개선에 대한 발표자의 문제의식에 기 본적으로 공감하며 다양한 측면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한 것으 로 생각함.

윽히, 공정거래사건의 3 심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사례를 잘 소개 해 주셨고 발표자의 의견과 같이 3심제는 피심인 방어권의 보장 이라는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 으로 볼 때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됨.

- 발표내용 중 최근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거래 3 심제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드리고자 함.

ㅍ. 공정거래소송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1. 공정거래사건의 전문성

경제사안을 다루는 공정거래사건은 대단히 전문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경제분석 전문기관인 경쟁당국으로 하여금 경쟁제한성 등 에 관한 1 차적인 판단을 하고 법원은 경쟁당국의 사실판단을 존 중하여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한데서 유래함.

- 공정거래사건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실질적 증 거의 법칙에 따라 연방항소법원과 연방대법원은 FTC 가 내린

사실판단에 관하여는 개입하지도 않을 정도로 경쟁당국의 전 문성을 존중해 주고 있음.

O 공정거래사건은 그 전문성이나 복잡성면에서 교통이나 건축 등 일반행정사건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데, 동일한 불복절차를 밟게 한다는 것은 3 심제라는 형식논리에 억지로 끼워맞추는 것밖에 되지 않을 수 있음.

- 행정심판위원회의 사건들은 대부분 정형적이고 그 다지 전문 적이지 않음.
(예) 처분이유의 분량이나 내용

2. 공정거래사건 처리절차의 특수성
$\bigcirc$ 세계 어느 나라든 공정거래절차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효율 성과 적법절차를 조화시켜야 한다는 것임.

- 경쟁당국은 훼손된 경쟁질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하여 엄격한 법원의 절차를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가급적 피심인의 방어권을 존중해 주어야 함. 따라서, 경쟁당국의 사건처리절 차는 사법절차가 아니라 준사법절차라고 함.

O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가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임(예, 1회 심리에 의한 심판종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처리과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대심구 조를 채택하고 있고 구두심리에 대단히 충실하고 증거에 의 한 심판을 하고 결정이유를 충실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국 내 어느 행정기관보다 준사법절차를 잘 정비해 두고 있음.
(예) 구두심리는 법원보다 훨씬 더 충실
(예) 공정위 의결서는 법원의 판결문보다 더 충실한 측면
(예) 행정심판보다는 훨씬 더 피심인의 방어기회가 충실


## 3. 경쟁질서의 조속한 안정

0 공정거래사건은 전문성으로 인해 현행 2심제 하에서도 종결되기 까지 4-5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경쟁질서를 너무 장기간 불안정된 상태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특히, IT산업은 상품의 주기가 2,3 개월밖에 되지 않음. 몇 년 후에 판결이 확정된다 해도 아무런 기여를 못할 수 있음.

3심제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보다 소송기간을 더 단축시 키는 것이 바람직함.

- 우리나라 경쟁법 집행의 장기적인 과제는 공정위 사건처리절 차를 좀 더 정비한 후 미국처럼 실질적 증거의 법칙을 도입 하여 사실문제 대해서는 법원이 존중해 주고 법률적인 판단 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확정을 앞당기는 것임.

○ 특정한 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기간이 더 길어지면 질수록 기업들은 경영의 불확실성이 제고되고 투자결정이 어려 워질 수 있음.

- 공정거래법이 경제헌법 내지 경제의 기본법임을 감안한다면 법률적인 불안정상태가 조기에 해소되어야 경제질서가 원활 히 작동할 수 있음.

O 소송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 사이에 불공정행위로 인해 경쟁기 업이 시장에서 퇴출되어 버릴 수 있고 그 경우 공정위가 소송에 서 이긴다 하더라도 훼손된 경쟁질서의 회복은 어렵게 됨.
4. 글로벌 스탠더드

○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EU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공정거래 소송 2심제를 유지하고 있음.
5. 중소기업 및 소비자

O 중소기업은 소송수행의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3 심제보다는 오 히려 2심제가 더 나음.

○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비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소송이 확정된 후 이를 토대로 하는 것이 유리한데 3심제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야 함.
6. 실질적 4심제 우려

O 공정위 사건처리절차가 준사법적임을 감안한다면 3심제 전환은 실질적으로는 4심제가 되어 버릴 수 있음.

- 일반행정사건의 행정절차는 공정거래사건의 준사법절차와 비 교조차 하기 어려움.
III. 결 어

O 공정거래사건 3심제 논의는 일부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부작용 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됨.

0 금번의 3심제 논의는 현행 공정거래사건 처리절차가 미흡한 측 면이 있기 때문에 대두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됨. 지속적으로 준 사법적 절차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음.


[^0]:    1）申鉉允，＂韓国公正取引委員会における審決構造と手続についての改善方案＂，「北大法学論集」 第54卷 第6号（2004），2204面。

[^1]:    위원 임기를 대통령 보다 장기로 하고，공정거래의원회 위원의 임용을 반드시 순차 적으로 하도록 하여，행정권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에 대해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 기 어렵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김유환，＂공정거래규제의 집행체제＂，「공 법연구」 제 33 집 제5호（2005），550면）．
    6）황보윤，＂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공정거래법강의 $\Pi_{」}$（법문사，2000）， 560 면；정호열，「경제법（제3판）」（박영사，2010），500면．
    7）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응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Federal Trade Commission의 경우 대통령이 상원의 조언과 동의에 의해 임명하는 5 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원 중 3 인은 동일정당 소속이어서는 안된다．또한 위원들의 임기는 7년 이고 2 인 이상이 같은 해에 임기종료되지 않도록 서로 엇갈리게 되어 있다（Stephen
    G．Breyer／Richard B．Stewart／Cass R．Sunstein／Matthew L．Spitzer，Administrative Law and Regulatory Policy－Problems，Text，and Cases，4th ed．，（1999）．p．749）．

[^2]:    33）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개정 전 사전심판제도 하에서 일단 낸 권고•명령 을 변경 수정한 사례가 있다（公正取引委員会事務総局，＂独占禁止法基本 \｛問題寫談会資料（第27回）＂，2007．3．16，3－4面）．
    34）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한 결과 다음과 같

[^3]:    1) 헌재 2003. 7. 24. 자 2001헌가 25 결정

    반독점과 공정거래에 위배되는 행위를 규제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관련된 경 제적 상황,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개별 기업의 구체적 상태 등을

[^4]:    신속•정확히 파악하여 적정하고 신속한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규제기 관이 갖추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는 규제기관의 행정적 전문화가 요청되고 다른 한 편, 부당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가 대상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재산권에 미칠 수 있는 치명적 침해의 심각성에 상응하여 사전고지와 청문, 엄격한 사실인정 과 공정한 판단 등을 보장하는 절차적 엄격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는 규제기관의 사법적 엄격화가 요청된다. 만일 행정적 전문성만을 강조하여 그 권한 을 일반 행정기관에 그대로 맡긴다면 행정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대하여지고 그 권한이 자의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 한편 사법절차적 엄격성만을 강조하여 이를 법원에 맡긴다면 통상의 사법절차를 모두 거치는 데 따른 시간의 경과 등으 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격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행정부에 속하지도 않고 사법 부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독립기관에게 이를 맡길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라 행정 권과 사법권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기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하여 독립규 제위원회로서 독점규제와 공정거래 유지의 국가기능을 담당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연히 행정적 전문성과 사법절차적 엄격성을 함께 가 져야 하며 그 규제절차는 당연히 '준사법절차'로서의 내용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다.

